



www.seoul.go.kr
제 3239호
2014. 7. 1.(화)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목 차

◆ **자치법규**

[조 례]

제5718호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

자 치 법 규

[조 례]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5718호

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
2014년 7월 1일

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제2호”를 “조례는 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제2항”으로, “기초노령연금 비용”을 “기초연금비용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제2호”를 “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제2항”으로, “기초노령연금”을 각각 “기초연금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 등의 지급으로 인해 국가부담비율이 차감된 자치구는 차감된 비율에 상당하는 비용을 해당 구비로 부담하여 변제하여야 한다.

제6조 전단 중 “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제2호”를 “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제2항”으로,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)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기초연금법 시행 후 최초로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기초노령연금법」이 「기초연금법」으로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의 지방비(서울시-자치구)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개정 「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
- 나. 상위법인 기초연금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, 제3조, 제6조)
- 다.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직제 반영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함(안 제6조)



기관의 장	
선 람	

공 람									